
요소수 · 요소 및 주사기 · 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

2026. 8. 20.

관 계 부 처 합 동

1 요소수 · 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2개월 연장**하되 **보관 기준을 완화**

- **(현황)**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불안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중(「물가안정법」 제7조)

*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

적용물품	시행기간	적용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요소수, 요소	'26.3.27. ~ 8.31.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금지

- (수급동향)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수입 여건은 개선 전망, 요소 재고(공공비축+민간 합산)는 평시 수준(3~4개월분) 확보

* 수출쿼터 약 200만톤 배정, 국내기업 중국산 물량 도입계약(약 7천톤, 1개월분) 진행중

- **(추진방향)** 현재 요소 수급은 안정세이나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준 완화(보관 150 → 200%) 및 2개월 연장 추진

- (기준 완화) 수급안정 전망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 보관 기준을 완화(150 → 200%)

- (기간) 9.1일 ~ 10.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중동전쟁 상황 및 요소수·요소의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연장여부 검토

현 행	개 정 안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 보관 금지
·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	·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

2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 나프타 등 원료 수급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2개월 연장**

- **(현황)**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불안에 따라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중(「물가안정법」 제7조)

적용물품	시행기간	적용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주사기, 주사침	'26.4.14. ~ 8.31.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금지

- (수급동향) 6월부터 제조업체의 재고량 증가 등 공급 안정세

< 주사기 제조업체 생산량·재고량 현황 >

(단위: 만개)

구 분	5월					6월				7월					8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일일 생산량	492	520	469	491	517	449	429	390	403	375	372	354	321	216	291	353
재고량	4,977	4,868	4,589	4,637	4,818	4,962	5,245	5,564	6,292	6,600	6,758	7,033	7,149	7,199	6,703	6,954

- **(추진방향)** 나프타 등 원료 수급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 **2개월 연장** 추진, 기준은 既 완화*(7.24일)

* 보관량 기준 완화(150 → 200%) 및 판매량 제한 해제

- (기간) 9.1일 ~ 10.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중동전쟁 상황 및 주사기 수급·유통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연장여부 검토

현 행	개 정 안
·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	·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

※ (참고)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외에 현재 최고가격제와 병행하여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중(~9.12일)

적용물품	시행기간	적용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석유제품	'26.3.13. ~ 9.12.	석유정제업자	·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반출 금지
		석유판매업자	· 과다 구입보유 또는 판매 기피 금지